

2021년도 글로벌강소기업 모집 공고(연장)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참여기업 모집을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개요

□ 목적 :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세계 수출시장을 선도하고 지역경제를 주도할 대표기업으로 육성

□ 지정규모 : 200개사

□ 지정기간 : 2021년 ~ 2024년(4년간)

□ 지정기업 우대혜택

① 해외마케팅 지원 프로그램(4년간 2억원 한도)

- 정부보조금 : 총사업비의 50~70%이내에서 연간 1억원까지 지원

* 수출바우처(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중기부 소관) 메뉴판을 통해 지원

② 지역자율 지원 프로그램(기업당 3천만원 내외 지원)

- 시제품 제작, 연구장비 활용, 교육 및 컨설팅, 생산공정 및 품질 개선 등 지원(신규 선정기업 필수지원, 기 선정기업 자율지원)

③ 기술개발사업 참여시 우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참여시 우대(가점 3점)

* 국내외 수요처 및 투자기업의 구매 수요가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와 판로 확보를 통한 기업성장 제고

- 산학연콜라보 기술개발사업 참여시 우대(가점 3점)
* 중소기업이 대학, 연구기관의 우수한 연구인프라(인력, 장비)를 활용하여 공동연구개발 지원
- 수출지향형기술개발사업 참여시 우대(가점 3점)
* 매출액 100억 이상 700억원 미만이면서 직·간접 수출액 500만불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선도기업군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해외인증규격적합제품 기술개발사업 참여시 우대(가점 3점)
* 중소기업이 원활한 수출역량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 단계부터 타겟 국가의 인증/규격에 적합한 제품개발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④ 보증 및 금융지원(민간금융기관, 중진공)

NO	지원프로그램	주요 지원내용	지원기관
1	글로벌강소기업 우대 보증지원	이행보증보험료 10% 할인, 보증한도 확대	SGI서울보증
2	글로벌 강소기업 컨설팅 프로그램	가업승계컨설팅, 글로벌진출기업 지원 컨설팅, 성장통진단 컨설팅	신한은행
3	IBK강소기업 프로그램	저리자금 지원(최대 1.0%p 감면) 및 여신한도 우대	IBK기업은행
4	글로벌강소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금리 0.5% 인하, 외환수수료 감면, 보증료 70% 지원 등	하나은행
5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 지원	종합금융 지원,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법인카드 경비지출관리 솔루션 제공 등	우리은행
6	글로벌강소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우대금리, 외국환 우대서비스, 기업경영컨설팅 등	NH농협은행
7	글로벌강소기업 수출입금융 특별 지원 프로그램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특별 보증한도 지원 후, KB에서 우대 금리로 수출입금융 지원	KB국민은행
8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융자예산 3,000억원→5,000억원 확대 디지털수출, 소부장 기업 등 요건 완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 신청자격

- ☐ 신청자격 : 매출액 100억원~1,000억원 이면서 직·간접수출액 5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
(혁신형기업·서비스업 분야기업은 신청자격을 매출액 50억원~1,000억원이면서 직·간접수출액 100만불 이상인 경우로 적용)

* 혁신형기업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

** 신청자격 기준 : 매출액은 '19년 재무제표, 수출액은 '20년 직·간접수출액 적용

*** 수출실적 인정기준 : 직접수출(한국무역통계진흥원 또는 한국무역협회 발행본) +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한국무역협회 발행본) + 간접수출(KTNET(U-TradeHub) 발행본)

- ☐ 신청 제외대상 : 글로벌강소기업 2회 지정기업, 월드클래스 300 기업

3 평가내용

□ 평가단계 : 요건심사 → 현장평가 → 발표평가

□ 평가항목

① (요건심사)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신청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② (현장평가) 글로벌 역량진단

< 평가항목 >

구분	평가항목
수출기반 단계(20)	가격 및 품질경쟁력, 제품 생산기반, 기술 차별화, 핵심기술개발
수출기획 단계(20)	시장조사 활동, 시장조사 활용, 수출전략 체계성, 수출전략 실행가능성
판매실행 단계(20)	전담조직 보유 수준, 전담인력 전문성, 고객소통 활동, 수출 네트워크
지속성장 단계(20)	신제품 개발, 지식재산권 보유 수준, 인프라 확대, 지속성장 경영
공통역량(20)	매출액증가율, 부채비율, CEO 수출의지, 수출성공 가능성, 수출비율, 수출 실적 성장률

③ (발표평가) 기업에서 제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발표 및 질의응답

< 평가항목 >

구분	평가내용	구분	평가내용
성 장 가능성 (40)	성장목표의 도전성	기업 역량 (60)	수출확대 실적
	수출확대 목표와 전략방향의 적정성		수출국가 및 유통 채널 개척
	수출확대를 위한 세부추진계획의 현실성		
	기술확보 전략방향의 적절성		
	기술확보 전략과 실행계획의 적정성		연구개발 역량
	성장가능성		기업성장 역량
	지역산업 및 경제적 기여도, 지자체 - 기업간 연계효과 등을 고려하여 각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설정	고용 영향 (10)	일자리 양, 일자리 질
가점(5점)	사업재편 승인기업(3), 지역스타기업*(3), 산학협력 우수기업(3), 명문장수기업(3)		

* 비수도권 소재 광역지자체장이 지정한 지역스타기업으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해당사항 없음

4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신청주소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 신청방법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접속, 로그인 후
[수출지원사업] → [글로벌강소기업육성사업]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1.1.6(수) ~ '21.2.17(수) 18시까지

* 신청기간내 온라인 신청이 완료되지 않은 기업은 신청서 접수 불가

** 사업 신청지역은 본사 소재지 기준으로 신청

*** 접수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등록 요망

5 신청서류

□ 신청서류 : 아래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온라인 업로드 필요

NO	제출서류	용도	양식
1	글로벌강소기업 지정 신청서 원본 1부, 한글 파일 1부	평가증빙	[붙임 1]
2	중소기업확인서	평가증빙	
3	법인등기부등본	평가증빙	
4	사업자등록증(사본)	평가증빙	
5	'17~'19년 재무제표(표준재무재표증명, 홈텍스 출력본)	평가증빙	
6	'17~'20년 직간접수출실적 증명서 직접수출 : 직수출실적증명(한국무역협회 발급) 간접수출 : uTradeHub(www.utradehub.or.kr) 간접수출증명	평가증빙	
7	연구개발비 투자 확인서	평가증빙	[붙임 2]
8	외투기업 경영자 확인서	평가증빙	[붙임 3]
9	기업/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평가요건 조회용	[붙임 4]
10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평가요건 조회용	[붙임 5]
11	중소기업 일자리평가표	평가요건 조회용	[붙임 6]
*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평가기관 요청시, 원본서류 오프라인으로 제출 필요) * 외부기관 발급 서류는 서류 제출일 1개월 이내 발급 준수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 http://sminfo.mss.go.kr			

6 추진일정(안)

사업 공고	▶ 중소벤처기업부	'21. 1. 6
↓		
지역별 사업 공고	▶ 각 지자체	'21. 1월 초
↓		
신청·접수	▶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 온라인접수 : www.exportcenter.go.kr	~'21. 2. 17(수)
↓		
평가	▶ 요건심사, 현장평가, 발표평가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혁신기관	지역별 평가기간 ('21.2 ~ 3월말)
↓		
기업 추천 및 지역 사업계획서 제출	▶ 지역혁신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제출서류 : 공문, 사업계획서 등	~'21. 4. 12(월)
↓		
지정서 발급	▶ 중소벤처기업부	~'21. 4월말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7 기타 유의사항

- ☐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기업 우대혜택 중 해외마케팅 지원 프로그램은 수출바우처사업을 통해 별도의 평가절차를 거쳐 선정·지원하므로, 관심기업은 사전에 준비 요망

* 별도 평가절차에서 미선정시 해당 지원을 못 받을 수 있음

- ☐ 다음의 경우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①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나 거짓인 경우 및 온라인 접수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②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③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이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 부도, 휴폐업,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법인은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3조의 채권은행 협의회 또는 동법 제15조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지정기업은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 운영지침”에 의거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 요구 및 사업 추진 현황 조사 등의 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21년 사업설명회는 개최하지 않고, 온라인 설명자료로 대체

- 사업설명회 동영상 및 발표자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8 문의처

□ 지역별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지역혁신기관

기관명	전 화	기관명	전 화
서울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33	서울산업진흥원	02-2222-3803
부산중소벤처기업청	051-601-5166	부산테크노파크	051-320-3528
대구·경북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45	대구테크노파크	053-757-4174
		경북테크노파크	053-819-3044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94	광주테크노파크	062-602-7221
		전남테크노파크	061-729-2548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제주)	064-753-8757	제주테크노파크	064-720-3076
경기중소벤처기업청	031-201-6945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031-259-6494, 6493
인천중소벤처기업청	032-450-1132	인천테크노파크	032-260-0616
대전·세종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52	대전경제통상진흥원	042-380-3052
		세종테크노파크	044-850-4864
충남중소벤처기업청	041-415-0607	충청남도경제진흥원	041-539-4541
울산중소벤처기업청	052-210-0063	울산경제진흥원	052-283-7133
강원중소벤처기업청	033-260-1675	강원도경제진흥원	033-749-3312
충북중소벤처기업청	043-230-5388	충청북도기업진흥원	043-230-9753
전북중소벤처기업청	063-210-6485	전북테크노파크	063-219-2138
경남중소벤처기업청	055-268-2565	경남테크노파크	055-259-3358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관리기관)	02-6009-3511, 3514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055-756-7901